

시민경찰학교의 민·경·학 공동운영체제에 관한 연구

최종술*

〈 目 次 〉

- I. 서 론
- II.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III.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체제
- IV. 한국과 미국의 시민경찰학교 운영사례 비교
- V. 시민경찰학교의 새로운 운영체제 : 민·경·학 공동운영체제
- VI. 결 론

〈 요 약 〉

시민경찰학교의 활성화는 주민에게 경찰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주민협력치안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 시민들에게 경찰업무와 법집행의 설명 및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인 홍보로서 경찰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시민경찰학교는 경찰서 주도의 일방향적 운영체제이다. 일방향적인 교육운영체제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이해」는 향상시킬 수 있으나, 시민의 요구와 반응을 경찰기관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지지」를 반영시킬 수 있는 운영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주도형 운영체제가 아니라, 민·경·학 공동운영체제에 기초한 새로운 시민경찰학교의 모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시민경찰학교의 교육목적, 교육주체, 교육대상, 교육내용, 졸업후 관리라는 5가지 변수에 대한 새로운 방안제시를 통하여 새로운 시민경찰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한다.

【주제어 : 시민경찰학교, 지역사회경찰활동, 경찰서비스】

* 동의대학교 법·경찰학부 경찰학전공 조교수

** 본 연구는 2003학년도 동의대학교 학술연구기금에 의한 우수연구자지원사업의 결과입니다.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시민경찰학교의 도입하여 하반기부터 7대도시별 1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한 이후로 급속히 확대되어 2001년 상반기에는 57개 서(署)에서 시민경찰학교를 개설하였고, 하반기에는 62개교가 증설되었다. 그리고 현재 약 119개 경찰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실천적 프로그램으로서 시민경찰학교(CPA, Citizen Police Academy)의 활성화는, 주민에게 경찰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주민협력치안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 또한 시민경찰학교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경찰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원래 영국에서 비롯된 시민경찰학교는 미국으로 도입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미국전역에서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상반기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시민경찰학교는 시민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롯된 것이다. 경찰의 주도하에 시민들에게 경찰업무와 범죄행에 대한 설명 및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서 경찰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일방향적인 교육운영체제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이해」는 항상 시킬 수 있으나, 시민의 요구와 반응을 경찰기관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원래 Community Policing(지역사회경찰활동)은 주민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서 주도의 일방향적 운영체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시민을 위한 시민경찰학교」가 아니라, 경찰기관의 홍보용, 또는 홍보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지지」를 반영시킬 수 있는 운영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주도형 운영체제가 아니라, 민·경·학 공동운영체제에 기초한 새로운 시민경찰학교의 모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시민경찰학교는 크게 5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교육목적, 둘째, 교육주체, 셋째, 교육대상, 넷째, 교육내용, 다섯째, 졸업후 관리의 측면이다. 이 5가지 변수에 대한 새로운 방안제시를 통하여 새로운 시민경찰학교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에는 시민경찰학교의 운영현황 전반에 걸친 사항들로서, 시민경찰학교 모델의 구성요소는 교육목적, 교육주체, 교육대상, 교육내용, 졸업후 관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방법과 인터뷰에 의한 조사연구 방법에 의존하여 진행되었고, 필요한 문헌과 자료들은 library research와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되었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하여, 시민경찰학교에 관한 이론적 근거 및 관련 연구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조사한다. 특히 시민경찰학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총망라하여 조사함으로서 기존 연구논문과의 차별성에 유의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시민경찰학교에 관한 자료는 2002년 11월에서 2003년 1월중에 경찰청, 서울 경찰청, 그리고 몇몇 경찰서를 통해서 운영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는 실제적 조사에 의한 방법이다. 시민경찰학교 운영실무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사례분석과 새로운 운영체제 모형을 모색하는데 반영한다. 특히, 전국경찰서 시민경찰학교프로그램 담당자들, 시민경찰학교 졸업자, 그리고 교육생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활용한다.

세번째 연구방법은 비교연구이다. 우리나라 시민경찰학교 운영의 활성화 방안 도출에 관한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시민경찰학교 운영 사례를 비교, 고찰한다. 특히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의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사례는 우리나라 시민경찰학교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 검토가 용이하다.

3. 선행연구의 검토

시민경찰학교에 관한 선행연구들에는, 먼저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시민경찰학교운영 활성화 방안(2003-04)』이 있으며, 일반논문으로서, 최종술(2001)의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2001년 12월)’가 있다.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는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과 그 운영실태를 이론적 근거와 외국의 실태와 비교·분석하고 교육담당 실무자와 교육수료자들을 상대로 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종술(2001)의 연구는 우리나라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실태를 각 경찰

서별 운영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미국 7개 경찰서의 시민경찰학교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분석,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학술발표 등에서 발표된 논문도 있으나, 대부분 시민경찰학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논문들이다.

최초의 시민경찰학교가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활성화 되었고, 이제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길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적합한 『시민을 위한』 그리고 『시민의 요구와 지지』를 반영할 수 있는 『시민경찰학교』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경·학 공동운영체제에 기초한 새로운 시민경찰학교의 모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은 경찰-지역사회 관계 및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념에서 근간을 찾을 수 있지만,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 즉 사회치안은 경찰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시민과의 공동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이론, 그리고 Third Party Policing 개념과도 관계가 있다(치안연구소, 2003: 6-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민 참여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시민경찰학교는 경찰기관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시민과 경찰이 공동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하여 시민경찰학교의 프로그램운영에 관여함으로서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면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과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은 전통적 시민참여이론과 현대적 의미의 시민참여이론으로서 적극적 시민참여이론으로 구별된다. 즉, 전통적 시민참여의 모형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단일의 결정과정에 입각하고 있고, 그 전달과정은 생활력 없는 수동적 시민(서비스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동적인 관료(서비스 제공자)만이 존재하는 서비스 전달과정 뿐이었다. 그러나 적극적 시민참여인 공동생산(Coproduction)은 시민이 행정기관과 동일한 활력과 생명력을 갖게 되고, 종래의 수

동적인 시민과 능동적인 관료 모두가 행정서비스의 공동제공자인 동시에 공동소비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서비스의 공동생산

적극적 시민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은 전통적인 시민참여와 구별되며, 공공서비스가 시민의 활동과 정부공무원들의 활동을 통한 합작품이라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초를 둔 능동적인 활동이다.

시민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관한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Whitaker의 공동생산 유형

G. P. Whitaker는 시민참여 활동내용에 따라 공동생산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Whitaker, 1980, pp. 240-247).

① 시민의 도움요청(Citizen requests for assistance)에 의한 공동생산 : 행정기관 자체의 서비스 활동

많은 공공서비스 활동은 시민들의 특정한 요청이 있을 때에만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활동이다. 예를들면, 의료보조, 실업수당, 사회복지수당 등은 시민들이 신청할 때에만 지급되며, 화재, 범죄 및 의료긴급구조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정규생산자와 소비생산자의 생산활동 노력의 혼합으로서의 공동생산 의미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결국 사회보장, 복지, 실업, 의료와 같은 행정기관의 서비스 활동은 시민의 특정요구에서 비롯된다.

② 시민의 도움제공(Citizen provision of assistance)에 의한 공동생산 :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협력

시민의 도움제공은 시민의 도움요청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시민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함으로서 공공부문이 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시민자율 방범활동이 대표적인 것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시민이 도움을 제공해 준다. 시민의 협력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산으로서 이는 시민활동 그 자체가 객관적 서비스임을 의미하고 있다.

③ 시민-정부간 상호조정(Citizen/agent mutual adjustment)에 의한 공동생산 : 시민의 적극적 서비스활동에의 참여

시민과 정부간 상호조정으로서 정부와 시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해결을 위한 서로의 행동과 기대수준을 조절한다. 이러한 유형의 공동생산은 많은

경우에 가능하며, 또한 선호되는 것으로 시민은 더 이상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며, 정부와 함께 서비스의 공급에 책임을 지는 공동생산자이다. 이러한 유형의 공동생산은 공공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행정기관과 시민 양자간의 상호조정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서비스활동을 하면서 공존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양자간의 상호 공존성을 토대로 하여 즉, 관료와 시민이 정부의 정책문제를 이해하고, 그들 각자가 문제해결에 협력하면 행정일변도의 정책수립이나 계획설정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Brudney와 England의 유형

Brudney와 England는 적극적 시민참여를 통한 협동생산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Brudney and England, 1985, pp. 36-42).

① 개별적 협동생산(Individual Coproduction)

개별적 협동생산은 전달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두가지의 형태를 취한다. 먼저 연(軟, soft)서비스는 시민들이 수동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활동의 선택 여지가 거의 없는 서비스이다. 교육이나 복지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적령기 아동이 학교에 간다든지 복지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정규생산자와 소비생산자의 생산활동 노력의 혼합으로서의 공동생산 의미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두번째 형태는 경(硬, hard)서비스로서 시민이 그 자신의 소비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서비스이다. 화재시 화재경보기 작동, 집앞 거리의 쓰레기수거, 교통신호기 고장의 파출소 신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조직이나 공공기관과의 협조가 없이도 할 수 있는 반면에 사회에 주는 총량적 이익은 다른 활동에 비해 별로 크지 않다.

② 집단적 협동생산(Group Coproduction)

이익이 대부분 개별적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복되는 영역이 작은 개별적 공동생산 활동과는 달리 집단적 공동생산은 많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주민단체와 정부기관간에 공식적인 협동체계가 요구된다. 즉 집단적 협동생산은 수많은 시민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를 포함하며,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간의 공식적 메카니즘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함께 노력하는 주민단체나 이웃안전감시단(Neighborhood watch group)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민참여가 특정한 집단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익이 극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과 이를 극소수의 사람들은 미리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향유할 가능성이 있고, 행정기관과 참여자들간의 협력과 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③ 집합적 협동생산(Collective Coproduction)

집합적 협동생산은 이로 인한 편익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향유되는 집합재를 결과케 하며, 이러한 편익에 대한 재분배 효과를 함께 갖는다. 따라서 이 유형은 서비스 전달과정의 전통모델을 거부하고,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행위를 강조하며, 행정기관과 시민간의 협력관계로 특징지워진다.

이것은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집합적 공동생산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하에서의 공동생산활동은 지역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공공재를 생산하게 하며, 이는 시민들의 공동생산 활동을 제도화한 것으로 자원봉사대를 조직하여 경찰, 소방, 도서관, 공원 등의 서비스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Bradney and England, 1985, pp. 36-42).

3)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유형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된다.

적극적 시민참여 이론과 관련하여 논의해 본다면, 유사한 개념으로서 경찰학분야에서는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이라는 개념이 있다.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개념은 적극적 시민참여 이론을 통하여 더욱 확립될 수 있을 것이며,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개념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모형은 적극적 시민참여의 유형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본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개념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지방재정의 압박, 범죄율의 증가, 시민협조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동안 경찰이 주도하며, 일방적이었던 경찰과 주민(시민)의 관계를 지양하고, 범죄발생,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무질서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경찰과 일반시민이 함께 일하면서 해결해 나간다는 생각에 기초한 철학이다(정윤수, 1998, p. 86).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개념은 치안서비스의 공급자는 경찰이고, 주민들은 단지 수혜자에 불과하다는 사고에서 탈피하여 치안서비스의 생산에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생산의 유형은 시민들간의 협동수준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시민과 정부간의 협조수준을 다른 하나의 축으로 하여 공동생산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정윤수, 1998, pp. 89-90).

(1) 제1유형

이것은 정부와의 소극적인 협조하의 개인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집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활동(비상벨 설치, 추가 자물쇠 설치, 집밖에 야간등 설치)과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활동(호신술 훈련, 호루라기 휴대, 위험한곳 피해 다니기)이 있다. 자발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들 수 있다.

(2) 제2유형

이것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조하의 개인활동이다. 이런 경우는 시민들 자신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후에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예를들면, 공동장소에서 지갑을 도난당했을 때, 길가에서 강도를 당했을 때 등이다. 또한 자신들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지만 목격한 범죄행위를 신고하거나 범죄행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행위인데, 차가 사람을 치고 달아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상점에서 물건 훔치는 것을 보았을 때 등을 비롯한 화재시 화재경보기 작동, 교통신호기 고장의 폐출소 신고, 범인제보 등이 포함된다.

(3) 제3유형

이것은 정부와의 소극적인 협조하의 단체활동이다. 강도, 주택침입, 성범죄 등 그 지역에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독립적, 그리고 자율적으로 주민단체를 만듬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정보제공, 특정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경계심 제고, 자체적인 지역순찰, 야간등 보수 및 증설, 경찰서비스의 대응성 향상을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4) 제4유형

이것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조하의 단체활동이다. 주민단체활동 중 어느 것이 경찰과 협조하여 하는 활동이고, 어느 것이 경찰과의 협조가 없이 하는 활동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경찰과 협조가 없이 하는 단체활동으로 나열된 것들 중 많은 부분이 경찰과의 협조가 이루어질 때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제3유형과 제4유형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함께 생산하는 공공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시민-정부간의 협조수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구성원들이 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함께 노력하는 주민단체의 활동이나 자율방범대 혹은 이웃안전감시단(Neighborhood watch group)의 활동이 이들 유형에 속한다(정윤수, 1998, p. 90).

〈표 1〉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유형

		시민들간의 협동 수준	
		개인활동	단체활동
경찰과의 협조수준	소극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자물쇠의 추가설치 - 우범지역 피해다니기 - 경보기 설치 -호신술 익히기 - 호신장비 휴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으로 조직된 주민순찰대 - 지역에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 결성
	적극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발생신고 - 법정에서의 증언 - 수상한 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에 의해 구성된 주민순찰대 - 경찰의 도움으로 범죄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단체 - 경찰-지역사회 유관단체

2. 적극적 시민참여의 영향변수

적극적인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① 조직력, ② 시민들의 참여태도, ③ 지도력을 들기도 한다. 또 크게 일반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기도 한다. 즉, 전자에는 ① 참여주체, ② 참여동기, ③ 참여방법을 들고, 후자는 ① 지도자의 대표성과 합법성, ② 참여의 실질적 효과, ③ 비용/편익분석과 행정관료 등을 들고 있다.

그러면 경찰업무운영과 관련하여 적극적 시민참여의 영향변수를 크게 경찰행정 기관과 관련된 요인, 참여자로서의 시민과 관련된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윤종설, 2001, pp. 71-72)¹⁾.

1) 경찰행정기관과 관련된 요인

경찰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아무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따라

1) 윤종설은 “적극적 시민참여의 영향변수”를 크게 행정기관과 관련된 요인, 참여자와 관련된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서 경찰관과 경찰행정기관이 이를 인식하는 것은 치안서비스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김수신, 1986, p. 49). 경찰행정기관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첫째, 공공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적극적 시민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 둘째,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한 열성, 목표달성을 위한 지도력, 셋째, 경찰목표와 전략의 명확성 등을 들 수 있다.

2) 주민(또는 시민)과 관련된 요인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참여자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업무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의 정도는 적극적인 시민참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응집성(Cohesiveness)과 규모는 시민참여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Horton and C. L. Hunt, 1968, p. 197).

셋째, 주민의 의욕 및 동기가 적극적 시민참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Bellus and Hansknecht, 1967, p. 279). 시민의 참여가 주민들에게 중요한 효과를 주지 못한다고 느끼면 시민들은 참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시민들이 특별한 이해관계 혹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활동에는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김수신, 1998, p. 49).

III.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체제

1. 시민경찰학교(Citizen Police Academy) 개관

오늘날 경찰은 지역주민을 지역치안의 한 주체로 또는 동반자로 인정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문제나 관심을 파악하여 그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범죄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에 최우선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주민이 상호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통찰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치안을 말한다. 이는 과거의 법집행 위주의 소극적 임무에서 벗어나 경찰이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라는 적극적 임무를 수행함으로서 전통적인 경찰의 범죄

대응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시민경찰학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념과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찰과 시민과의 의사소통 라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시민경찰학교의 유래는 영국에서 비롯되었는데, 영국경찰이 경찰의 법집행 활동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경찰야간학교(policenight school)」라는 이름으로 1977년에 시작되어 이 프로그램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이 확대되어 미국에서는 Orlando시(Florida주) 경찰서에서 1984년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이와 같은 시민경찰학교의 개념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대규모 또는 소규모 경찰관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Gainesville시(Texas주), Bellingham시(Washington주), Springfield시(Illinois주) 그리고 Lakewood시(Colorado주)의 시민경찰학교에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즉, 시민경찰학교는 미국 전역의 수백개 시와 군(counties)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시민과 법집행 경찰관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시민경찰학교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찰서간 의사소통의 통로를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경찰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경찰활동의 형태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시민경찰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경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Understanding through Education*), 시민들에게 유익한 법집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시민들에게 경찰서의 조직구조와 업무, 활동 등에 대해서 교육함으로서 시민경찰학교의 교육과정은 훈련과정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경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들은 그들의 이웃이나, 지역사회내에서 경찰관과 경찰서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지를 보내 줄 것이며,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일조하게 된다. 또한 일련의 교육과정을 경찰관에 위하여 실시함으로서,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정책이나 절차에 관한 공공정보를 알려주는 기회가 됨으로서 대주민 홍보효과도 있다.

그 지역 경찰활동에 대한 보다 많은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지역사회와 경찰간의 많은 갈등이 단순히 경찰에 대한 오해로부터 야기된다고 볼 때, 시민경찰학교를 통한 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목적이 된다. 이처럼 시민경찰학교는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을 통하여 시민과 경찰간의 보다 나은 이해, 의사소통 그리고 동반자적 관계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시민경찰학교는 어떤 지역사회의 범죄를 줄이는데 중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교육을 통하여 수료생들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범죄문제 등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고 상호 동반자적 관계로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다. 또한 수료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들을 자신과 이웃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2.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체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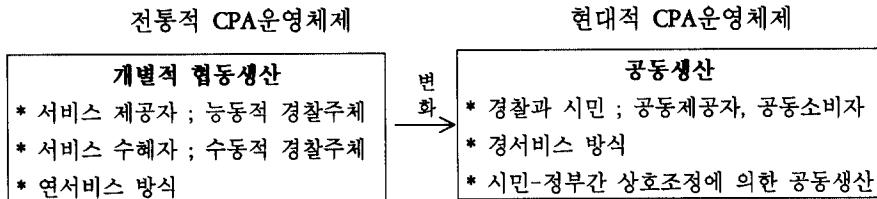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에 있어서 Citizen Police Academy의 운영주체는 경찰행정기관이 되고 있다. 전통적 시민참여의 모형이 그러했던 것처럼,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단일의 결정과정에 입각하고 있고, 그 전달과정은 지식, 기술 그리고 정보를 가지지 못한 수동적 시민(서비스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동적인 관료(서비스 제공자)만이 존재하는 서비스 전달과정이며, 운영체제이다.

또한 Brudney와 England(Brudney and England, 1985, pp. 36-42)에 의하면, 개별적 협동생산(Individual Coproduction)으로 전달되는 연(軟, soft)서비스의 방식이다. 즉, 시민들이 수동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활동의 선택 여지가 거의 없는 서비스이다. 교육이나 복지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되는 바, 단순히 적령기 아동이 학교에 간다든지 복지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정규생산자와 소비생산자의 생산활동 노력의 혼합으로서의 공동생산 의미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통적 운영체제 방식은 현대적 의미의 적극적 시민참여 모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적극적 시민참여인 공동생산(Coproduction)은 시민이 행정기관과 동일한 활력과 생명력을 갖게 되고, 종래의 수동적인 시민과 능동적인 관료 모두가 행정서비스의 공동제공자인 동시에 공동소비자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Whitaker(G. P. Whitaker, 1980, pp. 240-247)가 제시하는 시민-정부간 상호조정(Citizen/agent mutual adjustment)에 의한 공동생산, 즉 시민의 적극적 서비스활동에의 참여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시민과 경찰간 상호조정으로서 경찰과 시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해결을 위한 서로의 행동과 기대수준을 조절한다. 이러한 유형의 공동생산은 많은 경우에 가능하며, 또한 선호되는 것으로 시민은 더 이상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며, 경찰과 함께 서비스의 공급에 책임을 지는 공동생산자이다. 이러한 유형의 공동생산은 경찰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수

단이 된다. 따라서 경찰행정기관과 시민 양자간의 상호조정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서비스활동을 하면서 공존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양자간의 상호 공존성을 토대로 하여 즉, 경찰과 시민이 치안정책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 각자가 문제해결에 협력하면 행정일변도의 정책수립이나 계획설정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1> CPA운영체제의 변화

IV. 한국과 미국의 시민경찰학교 운영사례 비교

1. 한국의 시민경찰학교 운영사례

한국의 시민경찰학교는 2000년도부터 각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경찰업무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협력치안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경찰학교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시민경찰학교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는 바, 개설목적, 교육대상, 교육내용 그리고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해 본다.

1) 교육 목적

21세기 치안여건은 경찰력만으로 효율적 대처가 곤란하며, 지역 치안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 지원책이 없이는 사명감·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시민경찰학교 개설을 통하여 지역치안 참여자를 양성하고, 민·경 협력치안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부산진경찰서, 2001). 지역주민을 지역치안 참여자로 양성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효률적인 경찰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지역치안활동은 지역주민 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나 참여 없이는 어렵

기 때문에 경찰업무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 나가야 한다(강동경찰서, 2003)²⁾.

또한 경찰을 미래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비경찰과 경찰업무에 관심이 많은 관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이론과 현장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은평경찰서, 2003).

2) 교육주체와 대상

시민경찰학교의 교육주체는 오직 해당 경찰서가 되고 있다. 즉 경찰청 및 지방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해당경찰서 주관하에 모두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경찰기관 주도형이다.

시민경찰학교의 교육대상은 해당 경찰서의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주민들이고, 만 20세 이상 또는 18세 이상의 남녀 희망자(영등포경찰서, 2002; 부산 서부경찰서, 2003)로 하고 있다. 또한 참가대상자는 인격 및 행동면에 있어 지역에 신망이 있는 자, 범죄예방 및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열의가 있는 자,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 및 파렴치한 전력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인 중 참여희망자도 그 대상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 대한 이해와 범죄예방 및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열의가 있어야 한다.

해당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육인원은 보통 25~30명 내외로 하고(시민&경찰신문, 2002. 3. 25)³⁾ 교육시간은 보통 20시간内外로 하며, 주중의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고 있다.

3)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교과과정과 교육방법으로 구분한다.

교과과정을 보면, 먼저 주민 편익과 실생활에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운영이다. 즉 생활법률상식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식, 특히 운전면허별점 부과와 행정처분, 교통사고처리 절차와 법규위반자 단속 등 교통관련 법률과 행정처분, 그리고 형사절차 및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 즉결심판 진행절차, 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자동차의 안전관리와 자위방법활동 등이다. 한편, 경찰개혁홍보,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중요범죄 유형사례 소개, 범죄수사 감식, 신종 마약류 사범 및 인터넷 사

2) 지역주민과 경찰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환경조성으로 민·경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범죄없는 강동지역의 완벽치안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3) 『제2기 성북시민경찰학교』는 109명(남 73명, 여 36명)의 교육생 참여

이비 범죄유형 소개 등이다.

<표 2> 교육기간 및 인원

○○경찰서 시민경찰학교	교육인원(1회)	교육기간
은평	30명	4주과정 (16시간)
부산진	25명	10주과정 (27시간)
강동	27명	4주과정(18시간)
영등포	20명	4주과정(18시간)
부산서부	30명	4주과정(18시간)
성북	109명	4주과정(18시간)
부산해운대	제한 없음	3주과정(12시간)
남양주	언급없음	4주과정(18시간)
송파	34명(1기) 32명(2기) 31명(3기)	5주과정(24시간)

둘째는 현장체험과 견학이다. 청소년 범죄예방체험, 경찰지구대 근무와 음주단속 등 현장체험과 112신고 센터와 경찰박물관도 견학한다.

다음의 <표 3>은 교육과정에 대한 실례(부산진경찰서, 2002)를 제시한 것이다.

<표 3> 시민경찰학교 교육과정 실례

○교육기간 : 10주(주1회) ○1일교육시간 : 3시간(평일 19 : 00~22 : 00)

주차	주제	교시	교 육 내 용	강 사	주관부서
1 (2. 22)	입학 및 등록 경찰업무 소개	1	· 교육과정 안내 및 등록	방범계	방범
		2	· 경찰서장, 방범과장 인사말	경찰서장 방범과장	방범
		3	· 경찰서 치안여건 등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소개	방범과장	방범
2 (2. 28)	경찰조직 경찰관련법 청문감사제도	1	· 경찰임무·역할, 조직기구표, 계급체계 등	경무과장	경무
		2	· 경찰관련법규 교육	경무계장	경무
		3	· 청문감사제도 소개	청문감사관	청문감사
3 (3. 8)	현장견학	1	· 부산청 112범죄신고지령실		
		2	· 부산청 교통관제실	방범계장	방범
		3	· 상설 방범기기 전시장		
4 (3. 15)	방범활동 교육	1	· 즉결사법처리 절차, 기초질서 지키기 교육	방범지도계장	방범
		2	· 소년경찰업무 소개, 청소년범죄, 학교폭력, 예방 대책	여성 청소년계장	방범
		3	· 자위방범 및 범죄신고 요령	방범계장	방범

주차	주 제	교시	교 육 내 용	강 사	주관부서
5 (3. 22)	교통단속 현장체험	1	· 교통민원, 교통사고 처리절차 및 사례 질의응답	교통과장	교 통
		2			교 통
		3	· 음주, 무인속도기 실습	지도계장	교 통
6 (3. 29)	형사절차	1	· 형사민원 처리절차(민·형사의 구별) · 경찰, 검찰, 법원의 역할	수사과장	수 사
		2	· 강, 절도, 가정폭력 사건 처리절차, · 질의응답	형사과장	형 사
		3	· 과학수사반 견학	형사과장	형 사
7 (4. 4)	파출소 현장실습	1	· 파출소 현장실습(도보순찰, 소내근무, 112순찰 등 경찰관 합동 근무)	방범계장	방 범
		2			
		3			
8 (4. 12)	경찰개혁홍보	1	· 경찰개혁 관련 비디오 상영	경무계장	경 무
		2	· 초청강사 강의	방범계장	정 보
		3			
9 (4. 19)	협력방법 현장체험	1	· 현장강의 · 캡스(기계경비업체) 견학	방범계장	방 범
		2			
		3			
10 (4. 26)	교육수료	1	· 교육평가 및 설문조사	방범과장	방 범
		2	· 수료식(수료증, 기념품 증정)	방범과장	방 범
		3	· 다과회	방범과장	방 범

4) 졸업 후 관리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지역 정보교류와 치안 자원봉사활동 등 시민 명예경찰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수료 및 특전을 보면, 수료식 후 기념촬영 및 다과회를 개최하고, 수료증 수여 및 기념품을 증정하며 수료생 전원『시민명예경찰』로 위촉하고, 각종 경찰행사 및 모임에 초청된다⁴⁾.

또한, 졸업생들은 “시민경찰학교 졸업생 협의회”에서 협력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민·경 친목도모 및 지역치안에 기여케 한다⁵⁾. 한편 시민경찰학교 총동

4) 영등포시민경찰학교 실시운영계획, 2002. 10;

<교육수료 및 특전>

- 수료식 후 기념촬영 및 다과회 개최 - 수료증 수여 및 기념품 증정
- 수료생 전원<영등포시민명예경찰>로 위촉 - 각종 경찰행사 및 모임초청

5) 성북경찰서 시민경찰학교 실시운영계획, 2002. 3; 제1기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서울 성북경찰서 시민경찰학교 졸업생 협의회”에서는 협력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문화를 창립하여 「총동문회원」으로 기수별로 모임을 정례화하여 활동하는 시민경찰학교도 있다⁶⁾.

2. 미국의 시민경찰학교 운영사례

미국의 시민경찰학교(Citizen Police Academy, CPA)는 1984년 Orlando시 경찰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이와 같은 CPA는 대규모 또는 소규모 경찰관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Gainesville시(Texas주), Bellingham시(Washington주), Springfield시(Illinois주) 그리고 Lakewood시(Colorado주)의 시민경찰학교에서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시민경찰학교는 미국 전역 수백개 시(city)와 군(county)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시민과 법집행 경찰관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미국의 시민경찰학교 운영사례를 교육목적, 교육내용,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해 본다.

1) 교육목적

미국의 시민경찰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CPA의 목적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찰국간 의사소통의 통로를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경찰간의 협력을 통한 경찰활동의 형태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교육과정은 교육을 통하여 경찰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http://www.dentonpolice.com/cpa>).

San Antonio시 경찰국의 경우, 시민경찰학교의 목적은 San Antonio 시민들에게 San Antonio시 경찰서의 조직구조와 업무, 활동 등에 대해서는 교육하는 것이다. 시민경찰학교의 교육과정은 훈련과정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들은 그들의 이웃이나, 지역사회내에서 경찰관과 경찰서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일조하기

민·경 친목도모 및 지역치안에 기여하고 있다.

6) 군포경찰서 시민경찰학교 실시운영계획 2003. 6; 군포경찰서는 그동안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통해 배출된 교육생들이 앞으로 지역주민과 경찰의 효율적인 민·경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정보 교류로 지역민생 치안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총동문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위한 것이다(<http://www.ci.sat.tx.us>).

한편, 일련의 교육과정을 경찰관에 의하여 실시함으로서,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정책이나 절차에 관한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찰국도 있다(<http://www.ci.austin.tx.us/police>).

Evanston시 경찰국의 경우(<http://www.evanstonpolice.com/CPA>)는 보다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을 통하여 시민과 경찰간의 보다 나은 이해, 의사소통 그리고 동반자적 관계를 만드는데 있다. 즉, 지역사회 지향적인 경찰활동은 어떤 지역사회의 범죄를 줄이는데 중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전체 시민들의 요구와 지지를 얻어내고,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경찰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수료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들을 자신과 이웃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Boise시 경찰국의 시민경찰학교는 Boise시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지향적인 경찰 활동 프로그램이다.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에 걸쳐서 개설된다.

- Boise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남녀경찰관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갖는다.
- Boise 시민들에게 법집행은 어떻게 하는가, 왜 하는가를 교육한다.
- Boise시 경찰관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시민경찰학교는 교육기간 동안에 2개 유형의 강의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Boise 시 당국과 Boise시 경찰서가 공동으로 시행한다(<http://www.ci.boise.id.us/police/cpa>).

2) 교육주체와 대상

CPA의 주체는 보통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즉, 시정부 등 지방정부의 일정한 재정적 지원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CPA의 교육대상은 보통 해당 시에 거주하고 있는 17세 또는 18세 이상의 시민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Denton Police Department의 경우, Denton시에 살거나 직장을 가진 시민이면 누구나 시민경찰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형사사법기관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은 예외로 한다.

즉, 참가자는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서 사회단체, 문화단체, 교육단체, 경제단체 등 우리이웃에서 활동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이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한다. 물론 모든 참여자는 경력조회 등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한편, San Antonio시 경찰국의 경우, San Antonio시에 거주하는 21세 이상의 시민

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참여자는 경력조회 등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또 Austin시의 경우, 입교생들은 최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Austin시 지역에 직장이 있거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건축가, 은행원, 주부, 학생, 퇴직자, 교사, 동네 친목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Boise시의 경우, 18세 이상으로 Boise시에 살거나 직장이 Boise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기간을 보면, Denton시 경찰국(Denton Police Department)의 경우, 13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1회 참가인원은 1개 교육반 24명으로 제한한다. San Antonio시 경찰국에서는 11주간의 시민경찰학교를 비롯한 시민교육과 시민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개 교육반의 인원은 40명으로 제한된다. Austin시 시민경찰학교는 1987년 1월에 개설되어, 43회에 걸쳐서 1,349명(1회 31명 내외)의 시민이 수료하였다. Austin시 시민경찰학교는 경찰국의 직무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서 12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Evanston시 시민경찰학교는 경찰서 업무활동에 대한 지식을 참석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12주간의 프로그램으로 개설된다. 이 교육과정은 일주일에 한번 열리며, 일련의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실시되며, 교육생의 수는 25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표 4> 교육인원과 기간(www.ci.boise.id.us/police/cpa)

○○시 경찰국 시민경찰학교	교육인원(1회)	교육기간
Denton	24명	13주간
San Antonio	40명	11주간
Austin	31명	12주간
Evanston	25명	12주간
Boise	25명내외	11주간
Saint Paul	30명	12주간

3)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우리 지역사회의 범죄통제에 대한 시민의 역할과 해당시 경찰국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과과정은 실제로 매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Denton시 CPA의 교육내용을 보면, 청소년담당 경찰관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통담당경찰관들은 교통법규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역할과 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수사담당경찰관은 해당시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유형과 이를 범죄를 수사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다. 경찰활동에 있어서 시민과의 동반자로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인 법집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Austin시 CPA는 1987년 1월에 개설되어, 43회에 걸쳐서 1,349명의 시민이 수료하였다. 교육내용은 Austin시 경찰국의 직무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12주간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Austin시 경찰서에서 매우 화요일마다 12주간 열린다. 교육은 매주 경찰서내의 일정 부서별로 열린다. 주제는 경찰훈련, 통신, 경찰견, 순찰, S.W.A.T. 그리고 경찰관모집 등이 있다. 교육방법은 강의, 설명, 견학, 그리고 10시간간 순찰경찰관들과 함께 동행 순찰하는 것 등이 있다. CPA의 슬로건은 ‘교육을 통한 경찰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through Education)’이다. 따라서 교육목표 또한 경찰에 대한 오해나, 애곡 등을 없애고, 경찰관과 시민과의 화합과 친밀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San Antonio시 경찰국에서 실시하는 11주간의 CPA 교육과정은 주당 3시간 씩 하루저녁에 실시된다. 교육은 San Antonio시 경찰훈련학교에서 실시된다. 시민 경찰학교의 교육내용은 San Antonio시 경찰서 조직과 구조에 대한 설명, 신입경찰관의 모집과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San Antonio시 경찰서의 다양한 부서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의 임무, 거기다가 범죄대처 요령, 지문채취방법, 소방장구 사용요령 등에 대해서 실습한다.

교육담당자는 경찰학교의 교관, San Antonio시 경찰서의 특정부서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 그리고 경찰서 외부기관의 인사들을 강사로 초빙 한다. 시민경찰학교 교육생들은 순찰경찰관들과 동행하면서 순찰활동을 참관할 기회를 가지며, 8시간 동안 담당구역 순찰경찰관과 함께 순찰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 교육생들은 모임을 통하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부여되며, 휴식시간 중에 간식이 제공되며, 수료식을 계획하고 교육기간중의 출석에 대하여 싸인해야 하며, 교육과정의 모습들이 사진으로 제공된다.

11주째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생들이 수료식을 가지게 되고, 수료증을 받게 된다. 또한 이미 수료한 수료생들과 함께 시민경찰학교 수료생 협회(CPAAA, Citizen Police Academy Alumni Association)에 등록하여 활동하게 된다.

한편, Evanston시 경찰국의 CPA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의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차기 12주간 교육내용(2001년 3월 8일부터 2001년 5월 24일까지)
(<http://www.evanstonpolice.com/CPA>)

① 교육사항

- 가. 견학 및 동행 : 통신시설/911 신고센타
- 나. 목적

교육생들은 담당구역을 순찰하는 경찰관과 동행하면서 경찰서의 순찰활동과 최 일선에서 수행되는 경찰활동을 관찰하게 된다. 또한 교육생들은 911 신고센타의 활동과 시민신고에 대한 처리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교육기간 중 최소 4시간은 몇몇 순찰지역에 대하여 동행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동행하여 순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순찰차, 안전장구 그리고 통신장비를 포함한 순찰지원장비에 대하여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교육생들은 시민의 신고에 대한 대응을 경찰관과 함께 한다.

다. 통신시설/ 911신고센타

교육 이수를 하기 위하여 최소 3시간은 경찰서의 통신시설과 운영에 대하여 참관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담당 경찰관들은 대응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며, 한층 강화된 911 신고체제, 경찰지령체제와 신고전화접수 등과 함께 장비도 참관할 수 있다.

② 주별 교육내용

시민경찰학교의 주별 교육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주별교육내용

【1주차 교육내용(Week 1)】

- 1) 목표 : 이 기간동안의 교육목표는 경찰서를 살펴보고 소개하는 것이다. 각 부서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무와 책임 그리고 각 부서별 기초적인 임무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경찰서 부서별 연례보고서 뿐만 아니라 부서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2) 환영식
- 교육과정 소개
- 3) EVANSTON 경찰서의 역사
 - 역대 경찰서장들 · 설립이후부터 일어난 주요한 사건들
- 4) 경찰서 소개
 - 업무와 평가보고서 · 조직기구표 · 주요 업무기능영역
 - 개인별 업무와 근무처 편람

- 각 부서별 전화번호부(문의해야 할 부서를 설명) · 전체지령 체계도
- 5) 경찰서 투어
- 6) 연례보고서
 - 경찰서의 1년간 활동 · 업무와 범죄통계 · 변화된 모습과 비교
- 7) 유인물(교육자료)
- 조직기구표 · 전화번호부 · 연례보고서

【 2주차 교육내용(Week 2)】

- 1) 목적 : 이 기간 중 교육의 목적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주 검사가 어떤 사건을 추적, 조사하는 형사사법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게다가 실제사건에 기초한 모의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 2) 검찰관의 역할
 - (1) 고소의 접수 (2) 책임의 인정
- 3) 민법과 형법간의 차이점
- 4) 재판제도
 - (1) 증거심문 (2) 예비심리 (3) 법정출석 (4) 판결
- 5) 수색과 압수에 관한 법률
- 6)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시민의 역할
- 7) 모의재판

【 4주차 교육내용(Week 2)】 ~ 【 12주차 교육내용(Week 2)】

* 이하 생략(<http://www.evanstonpolice.com/CPA> 참조)

4) 졸업 후 관리

시민경찰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졸업생 모임을 통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미국에서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압도적이며, 참가 지원이 매회마다 증가하고 있다. SAN ANTONIO시 시민경찰학교의 수료생들은 11주째 교육과정을 마치면 교육생들이 수료식을 가지게 되고, 수료증을 받게 된다. 또한 이미 수료한 수료생들과 함께 시민경찰학교 수료생 협회(CPAAA, Citizen Police Academy Alumni Association)에 등록하여 활동하게 된다. 시민경찰학교 수료생 협회(CPAAA)는 1개월에 한번씩 모임을 열며, 또한 시민경찰학교 수료생들은 교육현장을 실제로 견학하고 강의를 듣기도 한다. 또한 시민경찰학교 수료생에게는 Municipal Court Warrant Drives, Blue Santa, McGruff Crime Prevention Caravans, telephone surveys, Cellular on Patrol classes 등을 포함한 경찰활동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 등, 경찰국 내의 많은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Boise시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수료생들은 Boise시 시민경찰학교 수료생 협회에 등록이 되고, 이후 경찰활동과 관련된 법집행교육 등에 참여하게 된다. Boise시 수료생 협회는 월 1회 모임을 가지며, Boise시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강의를 듣거나 토론의 기회를 가진다.

3. 한국과 미국의 시민경찰학교 운영사례 비교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실시 운영되고 있는 시민경찰학교의 사례를 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내용 그리고 사후관리의 4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면 4가지 변수를 통하여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체제를 상호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교육목적

CPA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과 한국 모두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에 있다. 시민경찰학교의 슬로건은 ‘교육을 통한 경찰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through Education)’이다. 교육목적은 경찰에 대한 이해나, 왜곡 등을 없애고, 경찰관과 시민과의 화합 및 친밀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 사명감이 있는 지역치안 참여자의 양성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나 참여 유도하는데 있다.

다만, 한국의 CPA는 교육의 주체가 관주도형으로서 오직 경찰기관에 한정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시정부 등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의 CPA는 그 목적이 친경찰적인 지역치안 참여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중요시 되는 반면, 미국의 CPA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다.

2) 교육대상

교육대상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시민경찰학교는 모두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의 시민경찰학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인, 즉 사회단체, 문화단체, 교육단체, 경제단체의 전문인들로서 등 우리이웃에서 활동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이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한다. 한국의 경우는 경찰에 대한 이해와 범죄예방 및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열의가 있어야 하고, 물론 장차 경찰이 되고자 하는 시민도 선호하는 교육대상이다.

3) 교육내용

교육내용을 보면, 한국의 CPA는 주민 편익과 실생활에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체험 및 견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경찰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각종 홍보 및 외래 강사의 초빙강의 등도 병행한다.

미국의 CPA는 지역사회의 범죄통제에 대한 시민의 역할과 해당시 경찰국의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내용이 되고 있다. 또 교육 방법으로 강의, 설명, 견학, 그리고 10시간간 순찰경찰관들과 함께 동행 순찰하는 것 등도 있다. 특히 범죄대처 요령, 지문채취방법, 소방장구 사용요령 등에 대한 실습은 한국의 CPA에서 도입할 만 하다.

4. 졸업 후 관리

시민경찰학교의 졸업생(또는 수료생)들은 졸업생 모임을 통하여 지역사회경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시민명예경찰』로 위촉되며, 『시민경찰학교 졸업생 협의회』 모임을 통하여 협력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민·경 친목도 모 및 지역치안에 기여하도록 한다. 한편, 최근에는 지역주민과 경찰의 효율적인 민·경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정보 교류로 지역민생 치안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총동문회를 창립하여 활동한다.

미국의 경우도 CPA의 수료생들은 『시민경찰학교 수료생 협회(CPAAA, Citizen Police Academy Alumni Association)』에 등록하여 활동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경찰활동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서 경찰서내의 많은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표 6> 한국과 미국의 시민경찰학교 사례비교

	미국의 CPA	한국의 CPA
교육목적	경찰활동에 시민참여유도	친경찰적인 시민양성
교육주체	공공기관 공동	경찰기관 주도
교육대상	지역사회 대표자, 교육효과 홍보, 예비 경찰	경찰에 대한 이해와 범죄예방 및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열의, 예비경찰
교육내용	범죄통제에 대한 시민의 역할, 해당시 경찰국의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실습, 견학 및 동행	주민 편익과 실생활에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 현장체험과 견학

	미국의 CPA	한국의 CPA
사후관리	시민경찰학교 수료생 협회(CPAAA, Citizen Police Academy Alumni Association) 등록활동, 경찰활동 프로그램의 자원봉 사자	시민명예경찰 위촉, 시민경찰 학교 졸업생 협의회모임 참여, 총동문회창립

V. 시민경찰학교의 새로운 운영체제 : 민·경·학 공동운영체제

1.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주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시민경찰학교 운영주체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일선경찰서의 주관하에 실시된다. 미국의 CPA는 보통 시정부의 재정적 지원하에 시 경찰국이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형식상 공동운영체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양국의 CPA 모두가 경찰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경찰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경찰학교은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반응은 시민경찰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시민경찰학교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임으로서 효율적인 경찰업무 수행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시민의 요구와 반응이 적극적으로 경찰활동에 반영되어 시민을 위한 경찰활동이 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시민경찰학교는 그 유래가 시민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의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경찰업무와 법집행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경찰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강조하게 되고 경찰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서 경찰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이 필요로 하고, 주도로 이루어지는 교육운영체제가 오히려 시민의 불만과 궁금증을 풀어주기에 부족할 때가 있고,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향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주민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찰서 주도의 운영체제로 인한 일방향적인 교육운영체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경찰서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경찰학교가 아니라, 경찰서 홍보용, 또는 홍보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경찰학교 졸업생들은 졸업생모임을 통하여, 경찰이 주도적으로 사후관리함으로서 친경세력으로 양성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경찰홍보용이라는 것과 친경세력화에 대한 우려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자칫 소위 친경 관변단체화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시민을 위한 경찰활동』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체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민·경·학 공동운영체제에 의한 시민경찰학교』 모형이 되어야 한다.

즉, 관주도형 운영체제가 아니라, 민·관 공동운영체제, 경·학간 공동운영체제, 또는 민·경·학 공동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결국 민·경·학 공동운영체제에 의한 시민경찰학교 운영체제는 시민단체, 경찰기관, 교육기관 3개 주체가 공동 또는 2개 주체가 공동운영하는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체제이다. 그러면 3주체를 구성요소로 한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민·관 공동운영체제』에 의한 시민경찰학교

먼저, 『민·관 공동운영체제』란 경찰서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함으로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의 내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의 객관성과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도 반영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경찰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경우에는 시민경찰학교의 교육영역을 현재의 체제보다 세분화함으로서 더욱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시민경찰학교의 교육영역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경찰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민·관 공동운영체제』의 예를 들면, 시민경찰학교의 교육영역을 청소년선도교실, 범죄예방교실, 자율방범대원교실 등으로 세분하는 경우이다. 청소년선도교실의 경우는 청소년선도와 관련되는 단체, 예컨대 한국청소년

연맹 등과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서 효률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3.『경·학 공동운영체제』에 의한 시민경찰학교

『경·학간 공동운영체제』란 경찰서와 일반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즉, 경·학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를 활성화하고, 지역치안문제에 대하여 시민, 경찰, 대학간 협조체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실무경험과 대학의 연구경험을 접목하는 경·학협력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서 경찰측에서는 실무교육이나 현장실습 등을 담당하고, 대학측에서는 이론과 교양 등을 담당함으로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문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측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습, 현장체험증은 경찰측에서 마련함으로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학은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고 홍보기능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밀착형 경찰상 구축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동원, 2001: 11-12)⁷⁾.

경·학간 공동의 운영체제는『지역사회 지향형 경찰』이라는 경찰개혁의 이념과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 및 봉사를 강조하는 시대적 조류와 요청에도 부응하는 것이며, 대학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서 관주도 홍보전략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식 시민경찰학교(CPA)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전환하여 도입함으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치안유지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경·학교류협력 차원에서 경찰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교와 경찰기관이 공동운영하는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학교와 경찰기관간의 경학교류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경·학교류협정서에 근거하여 시민경찰학교의 공동운영이 가능하다.

4.『관·관 공동운영체제』에 의한 시민경찰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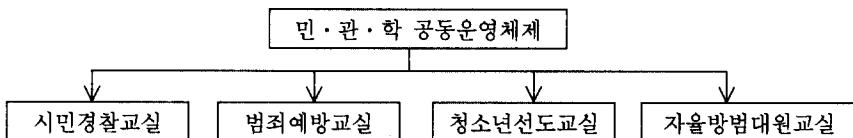
『관·관 공동운영체제』로서 경찰서와 다른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즉, 광역시·도 또는 관할 구청과 공동으로 시민학교

7) 경·학이 공동으로 주도한 시민경찰학교는 이미 광주대학교와 전남지방경찰청이 공동으로 자율방범대원교실을 실시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이동원(2001), 자율방범대원교육자료집 “시민경찰아카데미 개요”, 광주대학교 시민경찰아카데미. pp.11-12.

를 개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시·도, 시·군·구에 설치된 시민학교의 한 교육과정으로서 시민경찰학교의 범죄예방교실 등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방식은 대규모로 운영됨으로서『규모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특히, 현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경찰기관에서 참여한다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2> 시민경찰학교 운영체제 모형

VI. 결 론

이상에서 본 논문은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체제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 경찰기관, 교육기관으로서의 일반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민·경·학 공동운영체제』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시민경찰학교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경찰서의 업무와 활동사항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만남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주민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서 시민들이 경찰에 대하여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홍보차원의 교육이나 형식적인 업무 소개가 아니라,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경찰업무수행의 효률성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시민의 요구와 반응을 경찰기관이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제 시민경찰학교의 목적은『경찰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시민에 대한 경찰의 이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경찰학

교의 운영주체가 경찰기관이 될 것이 아니라, 시민과 경찰이 모두가 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육의 효률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시민경찰학교의 「민·경·학 공동운영체제」는 시민경찰학교의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동시민경찰학교 실시운영계획.(2003. 2). 강동경찰서.
- 군포경찰서.(2003. 6). 「시민경찰학교 실시운영계획」.
- 경찰청.(2001). 21세기 한국경찰의 나아갈 방향. 서울 : 세일문화사.
- 경찰청.(2001). 21세기 한국경찰의 비전. 서울 : 대한 문화사.
- 김용환.(1998).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체적 활동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 소.
- 김인.(1997). “경찰서비스공동생산의 효과 : 자율방범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 학보」, 31(4).
- 김충남 역.(2001). 경찰과 지역사회. 서울 : 여명출판사.
- 부산진경찰서.(2001. 8). 「시민경찰학교 실시운영계획」.
- 성동경찰서.(2002. 3). 「시민경찰학교 실시운영계획」.
- 시민&경찰신문 제25호.(2002. 3. 25).
- 윤종설.(2001). “적극적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공서비스 평가”. 「한독사회과학논 총」, 11(1).
- 은평경찰서.(2003. 4. 28). 「은평시민경찰학교 실시운영계획」.
- 정윤수.(1998).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과 정책방향”. 「한국정책학회보」, 3.
- 정홍익·김호섭.(1991). “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한국행 정학회보」, 25(2).
- 최종술.(2001).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실태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 회보」, 3.
- 표시열.(1989). “시민참여의 법적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3(1).
- Bayley, D. H.(1994). *Police for the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arroll, John.(1998). *Policing in the Information Age: The Return of the Professional Model?*. the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1998 National Conference.

- Dunham, Roger G., Geoffrey P. Alpert.(1993). *Critical Issues in Policing*. Illinois:Waveland Press, Inc.
- Goldstein, H.(1979). Improving policing: A problem- oriented approach. *Crime and Delinquency* 25.
- Harris, R. H.(1973). *The police academy: an inside view*. New York: John Wiley.
- Hensley, T.(1988). Civilian review boards: A means to police accountability. *Police Chief* 55, no. 9.
- Hoffman, D. n.d.(1991). *Community Service Unit information*. Arvada, Co: Arvada Police Department.
- Leishman, Frank, Barry Loveday, Stephen P Savage.(1996). *Core Issues in Policing*. London and New York : Longman
- Mastrofski, Stephen D., Robert E. Worden, Jeffrey B. Snipes.(1995). "Law Enforcement In A Time Of Community Policing", *Criminology Vol. 33*.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USA).(1989). A Model of Community Policing: The Singapore Story.
- Oliver, Willard M.(1998). Community-Oriented Policing(A Systemic Approach to Policing) (New Jersey: Prentice-Hall)
- Radelet, Louis A., David L. Carter. (1994).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5th ed. New York: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mpany.
- Roehl, J. A., et al.(1996). *National Process of Operation Weed and Seed*.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Rubinstein, J.(1973). *City police*, New York: Farrar Straus Giroux.
- Stone, Alfred R., Stuart M. Deluca.(1994). *Police Administration: An Introduc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 Swanson, Charles R., Leonard Territo, Robert W. Taylor. (1998). *Police Administration*, 4th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Taylor, R. W., et al.(1998). Core challenges facing community policing: The emperor still has no clothes.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Today* 17(1).
- Walker, S.(1992). *The police in America*, 2nd ed. New York: McGraw-Hill.
- Wallace, Harvey, Cliff Roberson, Craig Steckler.(1995). *Fundamentals of Police Administrat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인터넷사이트

<http://www.dentonpolice.com/cpa>

<http://www.ci.sat.tx.us/sapd/>

<http://www.police.nashville.org/citizen>

<http://www.ci.austin.tx.us/police/cpa.htm>

<http://www.evanstonpolice.com/CPA/cpa.htm>

<http://www.fcgov.com/police/citizen-academy.php>

<http://www.newport-news.va.us/police/cpacad.htm>

http://www.ci.pacifica.ca.us/CITYHALL/sub_cpa.html

<http://www.ci.boise.id.us/police/cpa/cpa.asp>

<http://www.stpaul.gov/depts/police/cpa.html>

Abstract

The study on cooperative operation system in Citizen Police Academy

Jong-Sool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Citizen Police Academy in Korean Police and to suggest the methods for activating Citizen Police Academy in Korean Police.

To find the proper programs for Citizen Police Academy in Korean Police, I examined Citizen Police Academy of America. CPA of America has found the proper programs for the Community and is enforcing them. People there are much interested in their CPA and are taking part in CPA Program.

The problems of Citizen Police Academy in Korean Polic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blems pertaining to organization and operation in Korean CPA

Second, the problems pertaining to education program in Korean CPA

Third, the problems pertaining to Citizen Police Academy Alumni Association(CPAAA) and CPA graduates.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this, The citizen police Academy of Korea needs operating system to do together the synergic operation setup. The synergic operation setup must be managed to a police, citizen and educational institution.

【Key words : Citizen Police Academy, Community policing, Police service】